

렉싱턴 공립 교육구  
Lexington,  
Massachusetts

거주지 증명서

본인/우리, \_\_\_\_\_(학생의 성과 이름 인쇄체로 기재)의 학부모(들) 또는 법적 보호자(들)는 이로써 아래 사실을 증명합니다:

1. 본인/우리는 위에 기재된 학생을 렉싱턴 공립 교육구에 등록하고자 합니다. 본인/우리는 매사추세츠 주법 및 렉싱턴 교육 위원회 정책에 따라, 렉싱턴 타운 이내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학생은 METCO 프로그램, 맥킨리-벤토 노숙자 교육 지원법(McKinney-Vento Homeless Education Assistance Act)의 적용을 받거나 위탁 아동의 경우가 아니라면 렉싱턴 공립 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METCO 학생이 렉싱턴 공립 교육구에 입학하려면 해당 학생은 반드시 보스턴 거주자여야 합니다.
2. 본인/우리는 위에 기재된 학생이 매사추세츠주 렉싱턴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본인/우리는 전술한 학생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그러한 주소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오(5)일 이내에 위에 기재된 학생의 학교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3. 본인/우리는 반대되는 정보가 없는 한, 본 선서는 렉싱턴 공립 교육구가 위에 기재된 학생이 거주지에 기초하여 렉싱턴 공립 교육구에 입학할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는 기본 정보로 사용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만약 전술한 학생이 본 선서에 포함된 정보를 바탕으로 렉싱턴공립 교육구에 입학하였고 그 후 해당 학생이 실제로 렉싱턴에 거주하지 않거나 METCO 학생으로 입학한 경우 보스턴에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본인/우리는 렉싱턴 공립 교육구에 대한 해당 학생의 등록이 즉시 취소되고 본인/우리는 공동 및 개별적으로 해당 학생의 등록금을 렉싱턴 공립 교육구에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이해합니다.
4. 본인/우리는 또한 본인/우리가 위에 기재된 학생의 학부모(들) 또는 법적 보호자(들)임을 증명합니다.
5. 매사추세츠주 일반법 제76장 제5절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음 절을 만족하는 한 실제로 거주하는 타운의 공립 학교에 입학할 권한이 있다. 법률 또는 학교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등록이 승인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교육 위원회도 해당하는 타운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인물의 입학 허용할 의무는 없다.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지원한 모든 인물은 부적절하게 입학한 공립 학교가 있는 타운에 학비 전액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어떠한 인물도 인종, 피부색, 성별, 성 정체성, 종교, 국적 또는 성적 지향에 기초하여 타운의 공립 학교 입학이나 그러한 공립 학교의 이익, 특권 및 과정을 취득하는 것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위증최 처벌 원칙 아래 20\_\_년 \_\_월 \_\_일 아래와 같이 서명합니다.

\_\_\_\_\_  
학부모/보호자 #1

\_\_\_\_\_  
학부모/보호자 #2

거주지 정보:

\_\_\_\_\_  
거리 주소

\_\_\_\_\_  
거리 주소 (학부모/보호자 #1과 다른 경우)

